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제조	구매		
				피복류 (10억원 이상)	피복류 (10억원 미만)	일반
계			100	100	100	100
I.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 력	소 계		60	50	40	50
	1.납품실 적	①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②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	10	미적용	10
	2-1.기술능 력 (10억 미만)	①기술인력보유 ②생산기술 축적정도 ③기술관리능력 보유 ④품질관리능력 보유	20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2-2.기술등 급 (10억이상 )	①기술등급	20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3.경영상 태	①신용평가등급	30	40	40	40
II.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40	50	60	50
III. 신인도	1. 사회적 책임 등 신 뢰 정도	①녹색성장 ②전시중점 관리 ③노사관리 ④납세의무 ⑤여성기업 ⑥장애인기업 ⑦경영관리우수 ⑧조달관리우수 ⑨기술획득 기여 ⑩수출기여 ⑪담합정황제보 ⑫보훈단체 ⑬가족친화우수 ⑭고용창출 ⑮사회적 기업 등	+ 3.9 ~ - 5.0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2.계약이 행 성실도	①품질하자 ②납품지연 ③보안사고 발생 ④협력업체 자금지급 지연 ⑤불공정행위 이력		-5	-5	-5
IV. 결격사유	1.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 여부	①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10	-10	-10	-10
		②생산능력 부족으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주]

1. 구매품목 중 '피복류(10억원 미만)'의 경우는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의 납품실적 및 기술능력과 신인도의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매품목 중 '피복류(10억원 이상)

및 일반'은 기술능력과 신인도의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신인도 평가 시 제조계약의 경우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와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구매계약의 경우는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평가는 적용하지 않고 「계약이행 성실도」만 반영하여 평가한다.
3. 「결격사유」의 심사항목 ②는 입찰공고조건에 명시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생산 능력확인은 제11조에 따른다.

## 1.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 가. 납품실적(배점한도 : 10점)

(단위: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①최근 3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 예정가격]	10.00	A.100% 이상	10.00
	수 량 [납품수량/ 입찰수량]		B. 50% 이상 -100% 미만	9.85
			C. 10% 이상 - 50% 미만	9.70
			D. 1% 이상 - 10% 미만	9.55
②최근 3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 액 [납품실적/ 예정가격]	9.50	A.100% 이상	9.50
			B. 50% 이상 - 100% 미만	9.35
			C. 10% 이상 - 50% 미만	9.20
			D. 10% 미만	9.05

### [주]

1. ①의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당해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고, ②의 「유사물품」이란 당해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 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되 ①,②의 평가결과 중 업체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동일 물품'은 방위사업청 훈령 「표준화 업무규정」에 의한 동일 '재고번호'로 하고, '동일 종류'는 방위사업청 훈령 「표준화 업무규정」에 의한 동일 '지정품명' 또는 조달청 훈령 「목록화지침」에 의한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로 판단하며, 관련 증빙은 심사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하도급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체계통합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의 당해 물품 납품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①,②의 납품실적은 당해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공공기관으로부터 별지 제3호 양식에 따른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거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인 경우에는 원본 확인된 당해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원본파일(XML)을 함께 제출한다),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제조계약을 위한 적격심사의 경우 제조 납품실적만을 인정하고, 구매계약을 위한 적격심사의 경우 제조, 구매 납품실적 모두 인정한다.
3. ①,②의 납품실적은 시판, 관납 등 모든 실적을 인정하고 ①의 동등이상 물품실적 적용 시 단가제의 경우에는 금액 및 수량을 평가하되 이중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며, 총액제의 경우에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또한 ②의 유사물품 실적적용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심사항목 ①의 납품실적이 1% 미만이거나 심사항목②의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②의 D등급을 적용한다.
4.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5. 당해물품에 대한 복수 방산지정 업체간 경쟁시, 최근 3년 이내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의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없는 방산업체가 ②의 최근 3년내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의 납품실적을 적용받는 경우, 위 납품실적의 배점한도를 9.80점으로 하고, A, B, C, D 등급의 평점을 9.80점, 9.65점, 9.50점, 9.35점으로 각 적용한다.
6. (적용례) 제6조제2항 관련, 공동수급체의 적격심사 평가점수 산출방법
  - P업체 60%, Q업체 40%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로 참여하고
  - 예정가격 총액은 100억원, 납품실적은 P업체 80억원 / Q업체 50억원인 경우

- 1) 구성원별 평가결과<sup>①</sup>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반영<sup>②</sup>한다.
- 2) 이때 납품실적<sup>③</sup>은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 기준으로 개별평가한 후, 각자의 분담률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 P업체 납품실적 : 80억원/(100억원×60%) = 133%, 평점 = 10점
- Q업체 납품실적 : 50억원/(100억원×40%) = 125%, 평점 = 10점

구분(배점)	P업체	Q업체
납품실적 <sup>③</sup> (10점)	10	10
기술등급 (20점)	19.4	20
신용등급 (30점)	29.2	29.2
입찰가격 (40점)	38	38
신인도 (-5.0~+3.9)점	1	2
구성원별 평가결과 <sup>①</sup> (합계)	97.6	99.2
공동수급체 평가점수 (각자의 출자비율 반영 <sup>②</sup> )	$(97.6\text{점} \times 60\%) + (99.2\text{점} \times 40\%)$ $= 58.56 + 39.68$ $= 98.24$	

7.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실적인정 기간은 최근 5년으로 한다.

- 1)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 2) 기업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본다.

나-1. 기술능력(배점한도 : 20점)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제조계약에 적용>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① 기술인력 보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6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	
			① 2명 이상	3.00
			② 1명	2.40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① 3명 이상	3.00
② 2명	2.40			
③ 1명	1.40			
C. 기능사 보유				
① 4명 이상	3.00			
② 3명	2.40			
③ 2명	1.60			
④ 1명	0.80			
D. 기본점수				
				3.50
② 생산기술 축적정도	공장등록년수	2	A. 3년 이상	2.00
			B. 2년 이상 3년 미만	1.70
			C. 2년 미만	1.40
③ 기술관리능력	기술관련 인증보유	4	A. 신제품 인증(NEP), 신기술 인증(NET),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EPC),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또는 지정)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4.00
			B. 특허, GD인증	3.80
			C.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3.60
			D. 미보유	3.20
④ 품질관리능력	품질관련 인증보유	8	A. KS 인증을 받은 자	8.00
			B.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7.70
			C. 우수단체표준, 한국공인제품인정(KAS), 싱글PPM, 자가품질보증 물품지정, 세계일류상품인증을 받은 자	7.40
			D. 미보유	6.70

[주]

1. 기술능력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제조계약에 적용한다.
2. ①의 「기술인력 보유」 심사항목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직무 분야(2개 이상의 분야를 정할 수 있다)로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6]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심사기준일 현재 고용현황을 평가한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동 자격을 갖추고 최근 12개월 이상 현재 근무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동 자격자의 최근 12개월 이상 상시고용사실을 입증(입증기간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할 수 있는 고용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행능력심사 대상자가 단일기업 내 여러 가지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이 때, 단일기업 내 여러 가지 사업의 판단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종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 입찰공고에서 직무분야를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목적물 관련 제조업과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및 유사 직무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3. ①의 「기술인력 보유」 심사항목 종합평점은 심사대상업체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종류별 보유 인원수를 A, B, C등급으로 구분하고 기본점수인 D등급과 해당되는 A, B, C 등급을 합산하여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한다. 다만, 1인이 다수의 기술자격 보유 시 하나의 기술자격만 인정한다.

4. ②의 「생산기술 축적정도」 평가요소인 공장등록년수는 당해 입찰대상 업종의 공장등록일자를 기준(입찰공고 시 명시된 산업분류번호 등재기일)으로 기산하되, 현 시점까지 연속하여 등록된 기간을 적용하며, 다만, 이전으로 인하여 단절은 연속된 것으로 보되 단절기간은 등록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국내 소재 제조자의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원에 의한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되고, 공장 건축면적 또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의 기업의 경우에는 공장등록 연수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공장건축면적 또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다. 소기업을 제외한 심사대상자는 공장등록증명원 등 증명서류 제출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등급에 따른 해당기간동안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증명자료와 해당 입찰공고일 이후 촬영한 공장 내·외부, 정면, 측면 사진 각 2매(4×6크기, 총 4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5. ③의 B, C등급 중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에 대한 평가 시 제외되는 경우는 통상실시권자,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이다. ③,④의 「기술, 품질」 관련 인증등급의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를 평가한다. 이 때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주관기관[별표2]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의 확인자료, 해당 인증의 세부분류 기준[별지 제21호] 등을 기초로 판단 적용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 관련 조달요구부서의 검토의견을 관련성 여부 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③의 A등급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또는 지정)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 확인 없이 인정한다.

6. ③의 인증등급 평가에 있어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고시 제2006-18호('06.7.1) 시행 이전에 우수품질인증(EM), 우수환경설비인증(EEC), 정보통신우수신기술

지정(IT), 한국신기술인증(NT), 신기술인정(KT), 환경신기술지정(ET), 건설신기술지정(CT)은 이 고시에 따른 NET 또는 NEP 인증제품으로 본다.

7. ③,④의 인증등급 평가 시 A, B, C, D 중 평가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며, 동일 심사 항목내의 동일등급 해당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하나만 정하고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한다.
8. ③,④의 인증등급 평가 시 서로 다른 물품을 한건으로 조달판단하여 계약물품 중 일부에만 해당 될 때에는 당해 입찰 대상물품의 조달지시 금액비율 만큼 적용한다.
9. 기술능력 평가는 ①, ②, ③, ④의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나-2. 기술등급(배점 한도 : 20점)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조계약에 적용>

(단위 : 점)

심사항목	등급		평 점
기술등급	T1	최고수준	20.0
	T2	매우우수	19.4
	T3	우수수준	18.8
	T4	양호수준	18.2
	T5	보통이상	17.6
	T6	보통수준	17.0
	T7	보통정도	16.4
	T8	보통이하	15.8
	T9	미흡수준	15.2
	T10	취약수준	14.6

[주]

1. 기술등급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제조계약에 적용한다.
2.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회사로부터 평가받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의 기술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는 경우로서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3.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이전 업체들의 기술등급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평가기준표(제조 : 30점 / 구매 : 40점)

(단위 : 점)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제조	구매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에 준하는 등급	30.0	4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39.7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39.4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39.1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38.8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38.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38.2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5.0	34.3

[주]

1. 경영상태의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의 자료로서 평가할 수 있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2. 입찰가격(배점한도 : 40점/60점)

(단위: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점
		제조	구 매			
			피복류 (10억원 이상)	피복류 (10억원 미만)	일반	
입찰가격	투찰률	40	50	60	50	※ 평점산식 : 아래 참조

[주]

1. 입찰가격 평점산식

$$\text{평점(점)} = \text{배점한도} - \left| \left( \frac{\quad}{100} - \frac{\quad}{\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 이상인 경우 평점은 제조의 경우 35점, 구매 중 피복류(10억원 이상) 및 일반은 45점, 구매 중 피복류(10억원 미만)는 55점으로 각각 적용한다.

### 3. 신인도(배점한도 : +3.9점 ~ -5.0점)

#### 가.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①녹색성장	환경오염 억제와 자원절약 기여	0.1	A.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환경표지인증, GR마크 인증, 녹색전문기업(「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녹색기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0.1
②전시중점 관리	중점관리 지정업체	0.2	A.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2
③노사관리	노사협력기여	0.1	A.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수상기업(매년 선정, 인증기간 3년)	0.1
④납세의무	성실납세 기여	0.1	A. 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이상 훈격의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	0.1
⑤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	0.1	A. 여성기업(「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0.1
			B. 여성고용률이 10%이상 또는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0.1
			C. 여성고용률이 5%이상 또는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05
⑥장애인	장애인기업 지원	0.1	A.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활동촉진법」에서 정	0.1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기업			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B.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 또는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0.1
⑦경영 관리 우수	수상경력	0.1	A. 국방품질경영상을 수상한 업체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최근2년 이내에 방산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서 방위사업청장 훈격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0.1
⑧조달 관리 우수	수상경력	0.1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방위사업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훈격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0.1
⑨기술 획득 기여	기술자료 제출사실	1.0	A.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에 견본(현품)에 의한 계약체결 후 규격화 승인을 받은자	1.0
		0.1	B. 입찰공고일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계약 목적물의 국방규격 기술자료(하위 결합체 및 부품을 포함한다.) 중 공인된 인용규격의 변경이나 단순 오가누락 사항의 시정이 필요한 항목(기술변경 세부항목내역서 상의 개별 건)에 대하여 입찰공고일 이전 까지 규격화 승인을 받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업체가 입찰공고일 이전 3년 이내에 기술변경 제안을 한 경우(단, 입찰공고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기술변경을 제안한 경우는 제외) - 규격화 승인을 받은 항목이 150개 이상인 경우(동일한 수정내용을 포함하는 항목은 중복되므로 제외한다.)	0.1
		0.1	C. 해당 계약목적물에 대해 국방규격으로 계약체결 하였으나 국방규격이 미비하여 견본(현품)을 대여 받아 제조하고, 견본에 대한 국방규격 기술자료(도면 추가 등)를 제출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업체가 견본을 대여받은 계약의 납품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자료를 제출한 경우 - 업체가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입찰공고일 이전 3년 이내에 규격화 승인을 받은 경우	0.1
⑩수출 기여	수출유망 중소기업	0.1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0.1
⑪담합 정황	담합정황 신고	1.0	A. 최근 3년간 담합정황을 제보하여 담합관련 포상 받은 실적이 있는 자	1.0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제보				
⑫보훈 단체	보훈단체 지원	0.2	A.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 집단촌, 상이단체 단, 계약대상품목이 사업 승인서에 승인된 품목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0.2
⑬가족 친화 우수	가족친화 기업 지원	0.1	A. 정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자	0.1
⑭고용 창출	신규고용촉진	0.3	A.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 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 대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 중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인 기업 8%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0.30 0.20 0.10 0.30 0.20 0.10 0.30 0.20 0.10
⑮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기업 등 지원	0.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 적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 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0.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 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 회적협동조합	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으로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 은 기업	0.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0.1

[주]

1.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는 제조계약에만 적용한다.
2.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곤란한 경우

주관기관[별표2]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영세기업지원은 심사대상자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한다.

3.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는 계약목적물 여부와 관계없이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 자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에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의 전시중점관리 대상업체에 대한 평가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른 주무부장관(권한이 위임된 자 포함)이 발행한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서(임무고지서 사본포함)로 한다.
4. ⑤,⑥의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고용사실의 평가는 최근 3개월 간 여성 또는 장애인 종업원 수 및 여성 또는 장애인 종업원 비율(대표인 여성, 대표인 장애인은 제외하여 산정)이 포함된 자료(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월 기준, 고용사실을 입증(입증기간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자료 또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서 확인한 증명서)를 제출하되 최근 3개월 평균값을 적용한다. 이 때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보며, 다만 동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5. ⑧의 조달관리 우수업체 평가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조달청장의 조달업무 우수업체 표창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제품분야 발전, 품질경영의 우수중소기업으로 표창된 경우에 적용한다.
6. ⑨의 기술획득기여 중 A등급은 방위사업법 제3조에서 정하는 군수품의 수리부속으로서 기술자료를 제출한 품목과 동일한 업종(통계청 산업분류번호 5번째 자리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 건에 한하여 적용하되,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과 견본(현품)에 의한 계약 체결 후 기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방위사업청(해당 규격관련부서)으로부터 견본(현품)에 의한 계약품목의 견본품 규격화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견본(현품)에 의한 계약품목의 규격화 승인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가점부여는 2010년도 이후 계약품목부터 적용하며 견본품 규격화확인서는 규격부서 검토 후 규격화 승인된 경우에 발급한다.  
기술획득기여 중 C등급에 대해 가점을 받고자 하는 심사대상자는 '견본(현품)대여 신청 및 반납 확인서' 와 '규격화(기술변경) 승인' 서류를 첨부하여 견본(현품)에 대한 추가 기술자료임을 증빙 하여야 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7. ⑩의 담합정황 제보는 '12.1.1. 이후부터 방위사업청 발주사업(중앙조달)을 대상으로 방위사업청 감사관실에 제보하여 포상받은 자가 신고당시 소속되어 있던 당해업체에 대하여 적용하되 신고자가 퇴사한 경우 및 내부자고발에 의한 경우에는 그 해당업체는 가점부여에서 제외한다. 담합정황 제보 가점을 원하는 업체는 제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비공개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⑭의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심사기준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1)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

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 (3)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중견기업 포함)은 대기업으로 본다.

(적용례) '13년 2월 심사기준일 전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11.9	'11.10	'11.11	'11.12	'12.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 + 100 + 100 + 100 + 102 + 101)/6 = 100.5 = 101$ 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 + 104 + 103 + 104 + 104 + 105)/6 = 103.83333... = 104$ 명

\*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104/101=1.02970297...=2.9703\%$

- 2) 심사기준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15점, 3~5인인 경우 0.10점으로 평가한다.
  - 3)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4)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9. 동일인물이 ⑤,⑥,⑭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고용창출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10.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의 ①~⑤는 합산하여 계산하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나. 계약이행 성실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①품질하자	하자발생 유무	-2.0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당해물품 중에서 최근 2년 이내 아래와 같은 하자 발생 사실이 있는 자 (계약건별 합산하여 적용) A. 계약금액의 5%이상 B. 계약금액의 3%이상 ~ 5%미만 C. 계약금액의 1%이상 ~ 3%미만 D. 계약금액의 0.1%이상 ~ 1%미만	-0.6 -0.5 -0.4 -0.3
	감액유무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당해물품 중에서 최근 2년 이내 아래와 같은 감액 사실이 있는 자 (계약건별 합산하여 적용) A. 계약금액의 20%이상 B. 계약금액의 10%이상 ~ 20%미만 C. 계약금액의 1%이상 ~ 10% 미만 D. 계약금액의 0.1%이상 ~ 1% 미만	-0.6 -0.5 -0.4 -0.3
②납품지연	지체상금	-3.0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전 물품 중에서 최근 2년 이내 아래와 같이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계약건별 합산하여 적용) A. 계약금액의 7%이상 B. 계약금액의 5%이상 7%미만 C. 계약금액의 3%이상 5%미만 D. 계약금액의 1%이상 3%미만 E. 계약금액의 0.1%이상 1%미만	-0.6 -0.5 -0.4 -0.3 -0.2
			○방위사업청과 계약 후 최근 2년 이내에 상기 감점대상 지체발생 계약건이 2건 이상 발생한 업체는 계약건수 별 합산한 점수에 -0.6점을 추가하여 감점한다.	-0.6점 추가
	지체상금 납부 미이행		○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채권 납부 통보를 받고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1년 이상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자 ※ 단,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서 등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소송 또는 중재 절차로 채무에 대해 분쟁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1.0
③보안사고	보안사고 발생 사실이 있는자	-4.0	○ 최근 3년 이내 보안사고 발생 사실이 있는자 A. 징역형(유예형 불문) B. 벌금형(유예형 불문) C. 기소	-3.0 -2.0 -1.5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D. 기소유예	-1.0
			○ 감점대상 사건이 1개를 초과하거나 총 피의자(피고인)이 1인을 초과할 경우, 가장 높은 감점에 초과 1건(1인)당 -0.3점씩 추가 감점	-0.3
④협력업체 자금지급 지연	협력업체 자금지급 지연한 사실이 있는자	-1.0	○ 최근 3년 이내 협력업체에 자금지급을 반복하여 지연한 사실이 있는자 A. 2회 B. 3회 이상	-0.5 -1.0
⑤ 불공정행위 이력	불공정행위 누적 점수	-2.0	○ 불공정행위로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으 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불공정행위 누적점수 가 아래에 해당하는 자 A. 20점 이상 B. 15점 이상 ~ 20점 미만 C. 10점 이상 ~ 15점 미만 D. 5점 이상 ~ 10점 미만	-2.0 -1.5 -1.0 -0.5

[주]

- ①의 품질하자 평가 시 하자발생유무와 감액유무는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 시 하자발생일은  
검사기관으로부터 하자로 판정되어 업체에 통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감액발생일은 면제  
승인된 후 품질 보증기관의 납품조서발행일을 기준으로 하며, 하자금액은 품질검사기관에서  
통보된 하자발생 내역별로 산정한다. 다만, 하자발생 유무 평가에 있어 A/S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의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과 같다.
  - 가. 최근 2년 이내에 발생한 감점대상 지체발생 계약건에 해당하는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지체발생 계약건이 2건 이상 발생한 업체는 계약건수별 감점합계에 0.6점을 추가하여 감점한다.
    - 예시) 지체발생 계약건 2건이상 발생시,  
D등급(-0.3점) 1건, E등급(-0.2점) 1건의 경우  
→ = D등급(-0.3점) + E등급(-0.2점) + 중복추가감점(-0.6점) = -1.1점
  - 나. "최근 2년 이내 아래와 같이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관련, 최근 2년  
이내 지체상금 부과일의 시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다음 (가)부터 (다) 중 어느 하나의 경우 : 지체상금 기 부과일
      - (가)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 (나)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었더라도 납품 후 15일이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다만,

2019.2.22. 개정된 계약특수조건 적용 이전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납품 후 15일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

(다) (나)의 경우로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해당 계약관의 면제승인을 말한다)되거나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2)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일
- 3)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의 취소 요청일

다. 최근 2년 이내에 지체상금이 부과되었더라도,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계약특수조건의 납품 지체통지 조항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1)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았거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되지 않은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 2)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결정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 3)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라.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었더라도 납품 후 15일이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다만, 2019.2.22. 개정된 계약특수조건 적용 이전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납품 후 15일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1)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 2)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결정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마. 다~라 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방위사업청 음부즈만 지체상금위원회에 의한 면제결정,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체상금이 감액된 경우 해당 금액을 지체상금 기준액으로 평가한다.

3. ③보안사고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군사기밀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거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확정일자 기준)를 감점대상으로 한다.

- 피의자(피고인)이 해당 「군사기밀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당시 적격 심사 대상업체 소속직원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에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 감점기준을 적용한다.
- 기소로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기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동일 사건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라도 형사처벌 감점을 받지 아니한다.
- 기소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감점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 동일 사건으로 「군사기밀보호법」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중복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둘 중 높은 점수를 적용한다.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관련하여 입찰업체의 자진신고를 접수하여 수사가 착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점 대상에 제외한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제출 시 「군사기밀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대한 자체 조사확인 등을 통해 [별지 제7호]에 따른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④협력업체 자금지급 지연 감점은 대기업인 체계업체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선금 및 착중도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 협력업체에 자금지급을 지연한 경우(지연된 자금을 지급완료한 날이 심사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경우 또는 심사기준일까지 자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위 체계업체가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 개의 계약에서 수개의 협력업체에 대하여 자금지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횟수는 1회로 본다.
  5. ⑤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 대한 이력평가 기준은 [별지 제6호]의 기준표를 따른다.
  6. 계약이행성실도 ①~⑤ 각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되 배점한도(-5.0점) 범위내에서 적용한다. 단, 하나의 위반행위가 수개의 감점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가장 무거운 감점기준에서 정한 감점과 감점 적용기간을 적용한다.